

독일 재범통계의 구조와 효과*

외르그-마틴 엘레** / 강우예(역)***

I. 서론

오랫동안 제가 수행해왔던 연구과제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을 지루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왜 재범관련 데이터가 필요한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형사사법제도의 주요 목적이라는 점은 형법 학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이다. 하지만 형법에는 다른 목적들 또한 존재한다. 법문화에 따라,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에 있어 지배적인 목적이 달라진다. 다른 목적들은: 범죄를 개별적이거나 일반적으로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형벌의 목적이다: 예방, 재사회화 혹은 격리. 독일 형법의 역사와 함께 한 학자들은 이러한 관점과 관련하여 란쯔 본 리스트가 제시한 개념에서 기원을 찾고 있다(그림1 참조). 재범 방지는 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범죄자에게 양형을 한 후에 어느 정도까지 이 목적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여 줄 정보가 필요하다.

* 이 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09년 추계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발표자가 일부 수정한 후 번역·정리한 것이다.

** 독일 괴팅엔대학교 교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그림 1. 형사사법제도의 주요 목적과 관련한 여러 가지 효과

정의의 실현	범죄예방 - 개별적 - 일반적
범죄통제	
개별범죄의 예방, 재사회화, 격리	

2. 재범 대 재유죄선고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형사적 제재가 장래의 범죄행위를 억제하는 목적을 실현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포착했거나 혹은 암수로 남아있는 형태의 범죄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암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은 차치하고, 유죄확정된 자에 대한 양형의 효과를 평가할 시 수사되었고 유죄확정된 범죄만을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의 접근법은 재범의 형태로 유죄확정된 적이 있는 자가 형사사법제도에 다시 나타났는지 여부를 찾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는 국가전과기록부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재범의 정의

재범	데이터 출처
반복 범죄(암수 포함)	자기 보고
경찰에 대해 신고되는/경찰이 기록하는 반복 범죄	경찰 데이터베이스/통계
반복 유죄선고 (PPS의 사건 종료 결정)	국가전과기록부
동종 반복 범죄(동종 범죄/ 범죄군)	국가전과기록부
수감자 관련 : 반복 수감 양형(재수감)	국가전과기록부

3. 독일 재범 통계 모델

연방법무부를 대표하여, 볼프강 하인츠(콘스탄츠)와 외르그마틴 엘레로 구성된 연구

팀은 1999년에 전국적인 재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그 연구는 국가전과기록부의 데이터에 바탕을 둔 것이다. 특정한 해에 기록되었으며 형사제재를 받거나 출감된 모든 사람은 재범여부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이후 4년 동안 관찰대상이 된다. 그 결과들은 범죄행위와 제재, 전과, 나이, 성별 그리고 국적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국가재범통계로 출판되었다. 당시, 이 접근법에 결함이 발생했다. 다음 기간을 연장하고 연방 대하여 알기 위하여 이후 4년 동안 관찰대상이 된다. 그 결과들은 범죄행위와 제재, 전과, 나이, 성별 그리고 국적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국가재범통계로 출판되었다. 당시, 이 접근법에 결함이 발생했다. 다음 기간을 연장하고 연방기록부에 입력의 하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프라이부르크의 한스외르크 알브레히트와 괴팅겐의 외르그마틴 엘레로 구성된 연구팀이 새로운 설계를 개발했다. 현재, 각 3개년으로 적어도 3차까지 계획되었다. 이 설계의 주된 문제는 어떻게 다른 차수에 관련된 자를 인지할 수 있으며 어떻게 데이터 보호관련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설계의 강점과 기대되는 효과가 논의될 것이다.

3.1 데이터의 출처 - 연방전과기록부

전통적인 형사사법상의 통계와는 달리, 중앙연방기록부의 독특한 데이터를 통해서만 일단 형사사법제도의 주목을 받은 자에 대한 계속된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재범 연구는 연방범죄기록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다 (중앙기록부 그리고 소년법원법에 따른 교육처분기록부).

연방전과기록부에는 독일법원이 내린 모든 유죄선고과 독일인 혹은 독일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한 외국법원의 판결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체포영장과 다른 관련 정보들이 연방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 만일 어떤 자가 재차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정보들은 적어도 10년 징역의 경우 통상 5년 동안 보관된다. 기록부의 두 번째 부분은 소년법원법에 따른 교육처분과 관련 있다. 중앙기록부에 따르면 유죄결정뿐만 아니라 조건(교육처분)부 혹은 조건 없는 기소유에 또한 기록된다. 이 정보는 범죄자가 24살이 될 때까지 유지된다; 만일 중앙기록부에 기록이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정보는 삭제된다.

2007년 여름, 연방전과기록부에는 약 1,530만 건의 전과자와 함께 약 630만 명의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다. 매일 약 10,000건의 새로운 기록이 통고된다. 연방전과기록부

의 주요 목적은 범죄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법원, 검사, 경찰 그리고 여타 행정부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들은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소위 비밀허가서(그림3 참조) 사인 혹은 사기업에는 제한된 정보가 제공된다.

그림 3. 연방전과기록부

(2007 : 1,530만 건과 630만 명의 기록)

중앙기록부	교육처분 기록부
· 모든 유죄선고	· 소년법원법에 따른 교육처분
· 체포영장 등	· 조건부 혹은 조건 없는 기유예
· 적어도 5년 동안 보관	· 범죄행위자가 24세가 될 때까지 보관
· 재범이 없는 경우 삭제	· 중앙기록부에 기록이 없는 경우 삭제

전국적인 재범관련 연구의 목적으로, 기준연도 2004년에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출감한 모든 이의 전과기록에 대한 암호화된 서류가 작성되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약 1,000,000명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2004년을 기준년으로 하고 2007년까지 3개년을 활용하여 작년에 데이터 수집관련 또 다른 작업이 수행되었다. 나아가, 정기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반복하며 이 새로운 차수의 작업은 보다 장기적인 연구와 연관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데이터에는 1994년에 형사제재 혹은 여타 처분(소년법원법에 따른 교육처분, 벌금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는 자들 혹은 출감(소년법의 징역 혹은 징역형)한 자들이 포함된다. 무죄방면된 자와 검사가 기소유예한 성인사건들은 기록되지 않았다.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정보가 제공된다.

판결법원

사람(성, 나이, 국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기술

제재/처분(제재의 종류, 출감된 경우 수감기간 그리고 집행유예의 경우 감독)에 관한 정보

이것에 기초하여, 우리는 다음 그룹들 혹은 카테고리들에 따라 데이터 수집을 기획한다(그림 4 참조).

그림 4. 재범 통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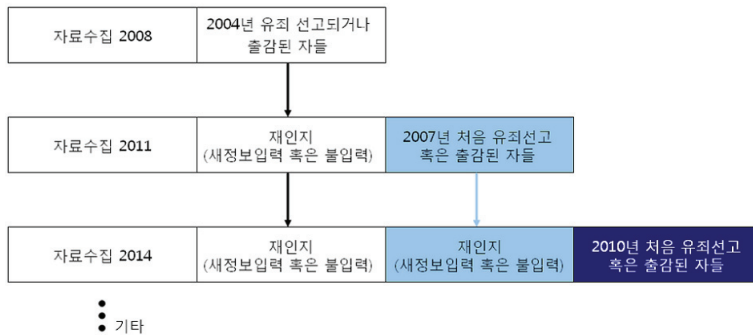
수집 특징	주요 분류/ 범주
기본 결정 - 비감금적 -	벌금 청소년 구금 소년법하의 다른 사법적 처분 소년형법에 따른 판결
기본 결정 - 감금적 -	자유형 그리고 소년자유형 선고 · 집행유예/집행유예 없음 · 가석방 위원 존재/부존재 · 기간 분류
기본 결정 - 범죄들 -	중대한 범죄(추상적 형벌) 두번째로 가장 중대한 범죄 세번째로 가장 중대한 범죄 네번째로 가장 중대한 범죄 다섯번째로 가장 중대한 범죄
사전 결정	숫자 가장 중대한 과거 결정 범죄 유형
사후 결정	숫자 가장 중대한 이후 결정 범죄 유형
개인별 세부사항	성별 국적 연령(마지막 범행시)

3.2. 독일 재범 통계에 대한 새로운 모델

여전히 기본적인 유죄선고가 삭제되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거의 모델에서는 4년의 관찰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중대 범죄행위에 있어 그 기간은 물론 너무 짧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기적인 포괄적 데이터 수집과 단위별 장기 설계를 연결할 새로운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설계에서는 3년, 6년, 9년 등등 단계별로 관찰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동시에, 원기입된 내용이 등록부에 의하여 삭제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우리는 유죄선고된 모든 이가 데이터베이스에 여전히 기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데이터 보호소와 힘겨운 씨름 끝에, 연구자들은 익명화된 데이터를 다음 차수 데이터 수집 작업 속에서 사람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암호화된 파일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었다. 첫번째 차수에 대하여 평가는 아래와 같이 구조화되었다. (그림 5 참조)

그림 5. 독일 재범 통계의 새로운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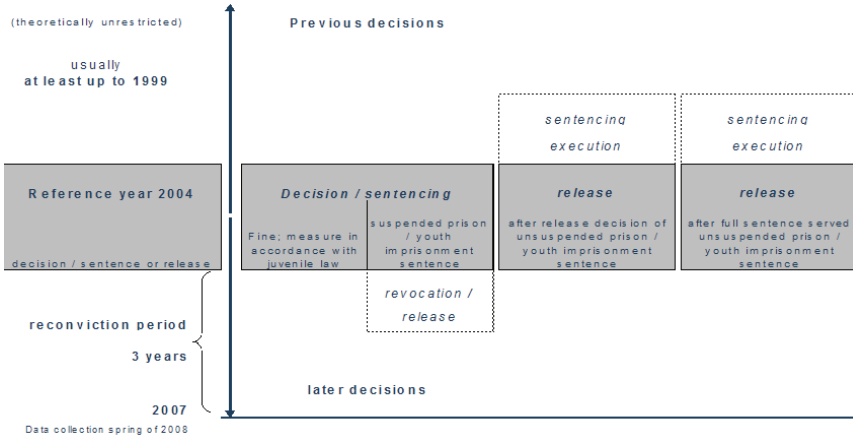
3.3 평가 구조

중앙연방기록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제재, 범죄행위, 과거와 미래의 유죄결정, 제재를 받은 자의 연령, 성별 그리고 국적과 관련하여 재범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6은 재범연구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것은 2004년에 특정한 판결에 있어 연방중앙기록부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비감금적 제재인 벌금, 집행유예의 취소없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소년법에 따른 비감금적 제재와 관련하여, 유죄결정의 날짜는 기준 일로 사용된다. 감금적 제재와 처분에 있어서는 발표 일시가 사용된다.

재범기록이 추가되면 2007년 말까지 각 3개년의 기간 내에 1,000,000의 사람들이 조사된다. 2번째 그리고 3번째 기간에 우리는 그들을 각각6년에서 9년의 기간을 두고 관찰할 수 있다.

그림 6. 독일 재범 연구 설계



4. 예시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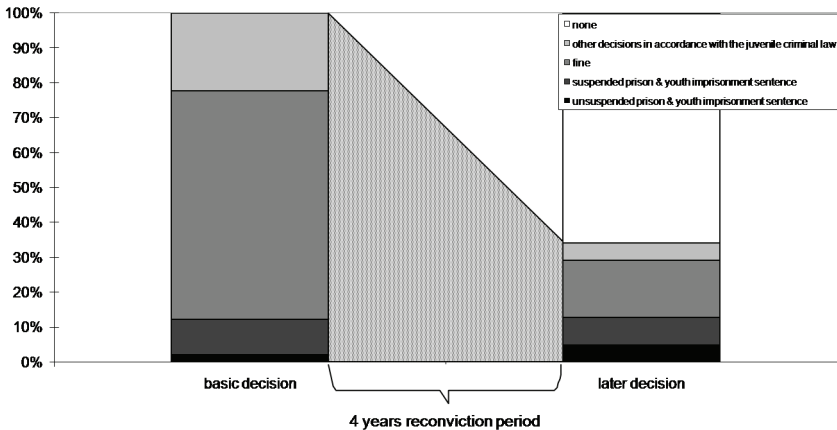
방법론에 관한 언급을 길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지루하게 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최신의 데이터로 이 작업을 할 수 없다. 그 데이터들은 아직 유효성이 없으며 연방 법무부장관이 검토하고 승인한 후 공개된다. 그러므로 과거 4년 간의 데이터 수집 관련 결과에 대하여 언급할 수밖에 없다(see Jehle/Heinz, Legalbewährung nach strafrechtlichen Sanktionen, 2003).

4.1. 전반적인 그림

그림 7은 전반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소년형법 하에서 형벌이나 다른 처분에 처해졌거나 혹은 - 징역형 선고를 받은 자들의 경우에 - 1994년에 출감된 유죄선고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체 4년의 재범 기간 동안 다시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 단지 약 3분의1 가량의 자들만이 다시 기록되었다. 고려되는 기본적인 결정들 간에, 소년형법상의 벌금형과 비감금적 처분들이 분명히 압도적으로 많다. 구속형과 소년자유형, 특히 집행유예되지 않은 자들은 단지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비율은 재범 기간

동안 다음 결정과 관련하여 차이가 난다: 소년법상의 벌금형과 비감금적 처분이 다수의 재범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형과 소년자유형 선고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그림 7. 기본적 결정 유형 그리고 재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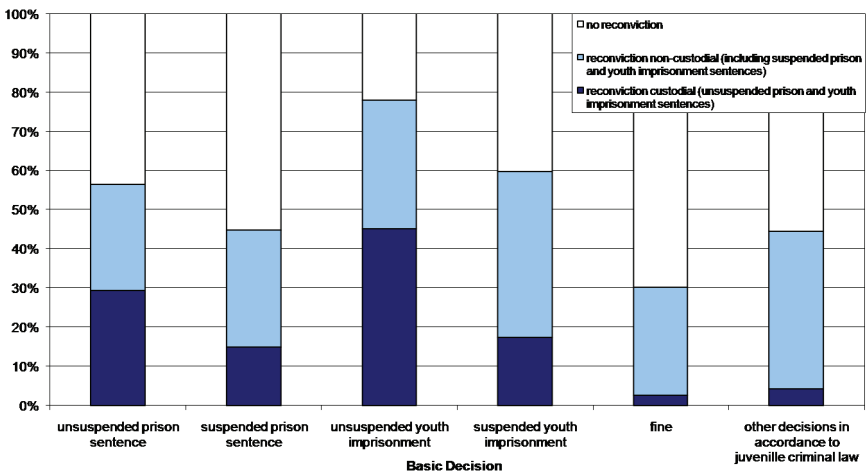


4.2 형벌 재범 비율

만일 아래 결정의 유형과 관련된 제재에 따른 차별점이 있다면, 두 가지 주요 집단이 포착될 수 있다: 집행유예 없는 자유형 혹은 소년자유형 선고를 포함하지 않는 모든 처분은 다음 결정들에 따라 비감금적인 특징을 지닌다, 다른 것들은 판결에 따라 감금적이다.

이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그림 8 참조): 기본적인 결정이 중대하면 할수록, 재범이 일어날 확률은 더 높다. 78퍼센트의 가장 높은 재범율은 집행유예 없는 소년자유형과 관련되어 나타나며 30퍼센트의 가장 낮은 재범율은 벌금형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보다 중대한 기본적 결정이 감금형의 재범과 관련하여 보다 높은 비율로 귀결된다는 것이 예상된다면: 소년자유형 혹은 자유형 복무를 한 후에 출감하는 사람들 중, 각각 45퍼센트 혹은 29퍼센트가 다시 수감된다. 이 데이터는 집행유예나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들이 수감된 자들보다 나은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림 8. 기본적 결정 유형별 재범 유형



4.3. 범죄별, 특히 폭력범죄별 재범율

추출된 범죄군은 전체 사건의 3분의2 가량을 포함한다(그림9 참조). 하지만 평균재범율은 일반재범율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특정범죄군을 관찰하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범죄의 양 범죄군(하나는 주취되지 않는 상태, 다른 하나는 주취된 상태)들은 평균 이하의 재범율(각각 24퍼센트와 22퍼센트)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범죄자들은 대부분 일회성 범죄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보다 높은 재범율(45%)의 무면허 운전이 존재한다. 절도와 강도의 가중된 형태가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다. 재범 비율은 약 60%이다. 마약범죄와 강간범죄 관련 재범비율은 평균보다 약간 이하이거나 약간 웃돈다.

그림 9. 기본적 범죄유형별 재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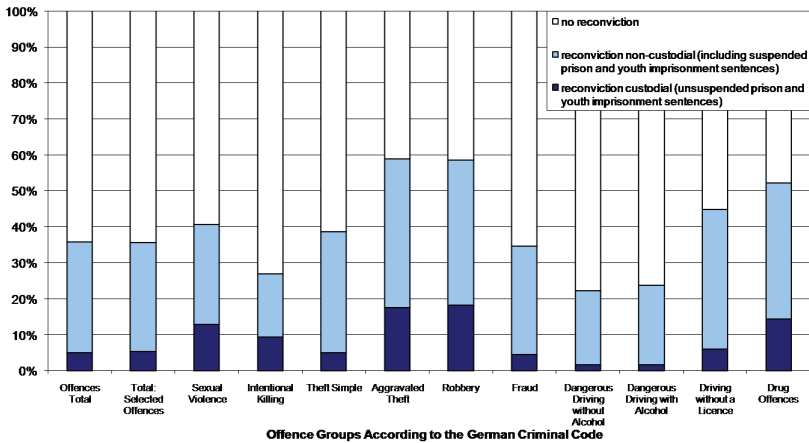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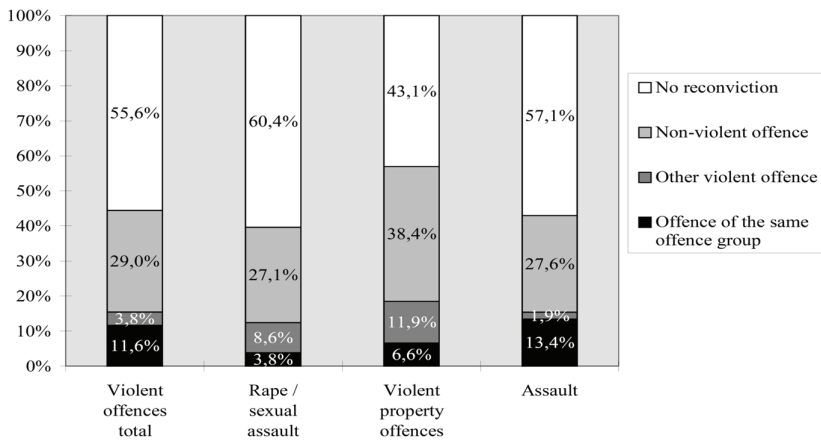


그림 10. 추출된 범죄군별 재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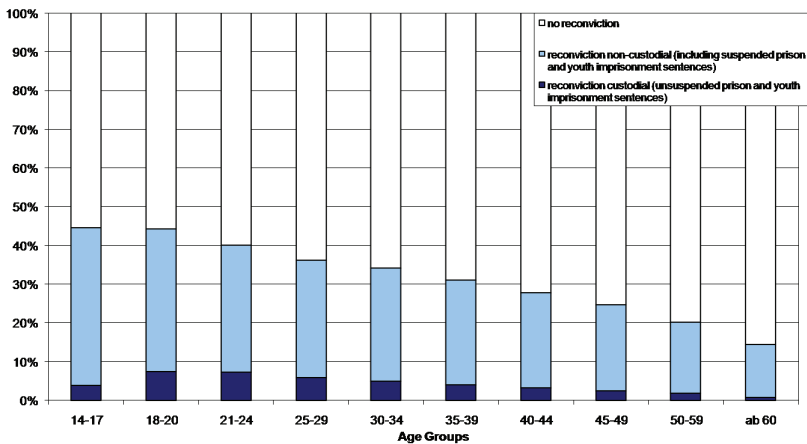
그러나, 범죄유형과는 관련 없이 모든 재범이 고려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범의 특정한 위험은 확실히 보다 낮다. 우리는 폭력범죄 관련 특정재범비율을 하나의 예로써 관찰한다면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그림10은 40%의 강간범은 다시 유죄선고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반복된 강간을 이유로 해서는 단지 약 4%만이 그러하고 다른 폭력범죄를 이유로 해서는 9%만이 그러하다. 다른 27%는 비폭

력적인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협박범죄 관련 그림은 다소간 다르다: 13%가 반복된 협박을 이유로 협박이 다시 유죄선고 되지만 일반적으로 재범율은 거의 동일하다. 물론, 만일 우리가 보다 긴 시간에 걸쳐서 유죄선고된 자를 추적하면, 특점범죄 관련 재범율은 약간 상승할 것이다.

4.4. 연령군별 재범율

그림11은 명백한 경향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이 젊으면 젊을수록, 재범율이 높아진다.

그림 11. 연령군별 재범 유형



4.5. 과거의 유죄선고별 재범율

그림12는 과거의 판결의 수와 재범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초범인 경우, 재범율은 아주 낮다; 거의 80%가 일회 범죄자로 남게 된다. 과거 유죄선고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범율이 높아진다. 동시에 수감된 사람들의 비율은 상승한다. 만일 우리가 단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유죄선고의 질적 부분을 관찰한다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림 12. 재범의 유형과 과거 유죄선고 숫자(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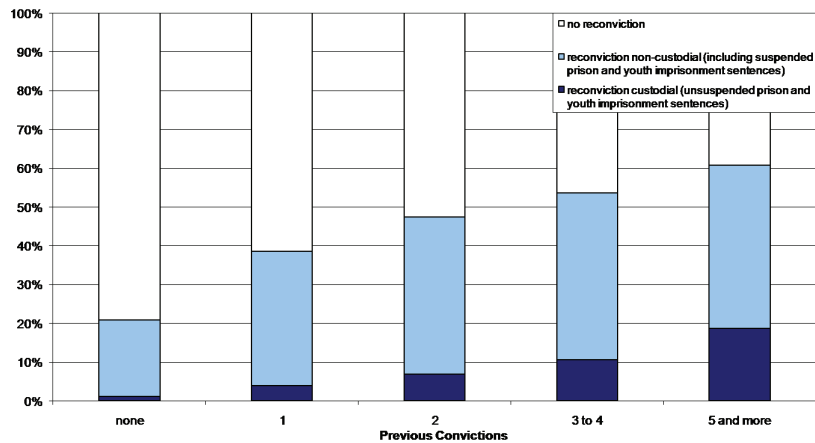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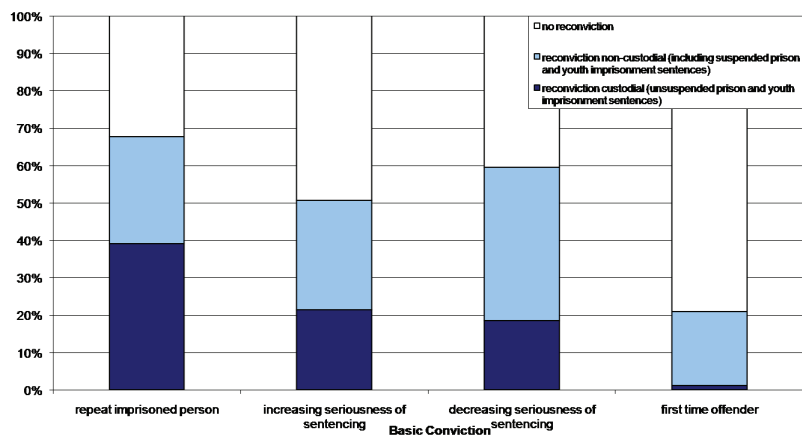


그림13은 반복해서 수감되는 자들은 가장 높은 재범율을 가지는 반면에 초범인 범죄 행위자는 매우 낮은 재범율을 보여주고 있다 - 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이다. 비감금형 후 감금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이 중대성이 증가한 형과 감금형 후 비감금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이 중대성이 감소한 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두 가지 군이 존재한다. 일반재범율과 감금형양형율과 관련하여 결과는 약간 다르다.



5. 국제적 비교

독일 재범연구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국가재범연구의 효과와 국제적 비교 결과와 관련된 몇 가지 언급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 1) 전국적인 재범연구/통계는 형의 종류, 범죄행위와 범죄행위자 군과 관련한 재범율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한다.
- 2) 그들은 특별 재범 연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저율을 제공한다.
- 3) 형의 종류에 따라 재범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만일 이것이 형의 다른 효과로 야기되었거나 법원의 선택적 양형의 결과라면, 공개되어야 한다.
- 4) 이것은 설계와 국가재범통계방법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에 유익한 접근법이다.
- 5)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와 범죄의 정의와 유죄선고 때문에, 만일 국가별 유죄선고율을 상호 비교한다면 오도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6) 재범율의 국제적 비교는 국가들의 범죄, 유죄선고 그리고 양형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하여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